



커튼월 하지철물 설치 작업 중 감전



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유리공인 피재자가 옥상층 외벽에 유리지지용 Frame을 설치하기 위해 외벽 중앙부의 원형 개구부(Ø900)에 포그려 앉아 6m 사각 Pipe를 수평으로 들어서 기 설치한 사각 Pipe(수직재)에 접촉하는 순간 감전되어 사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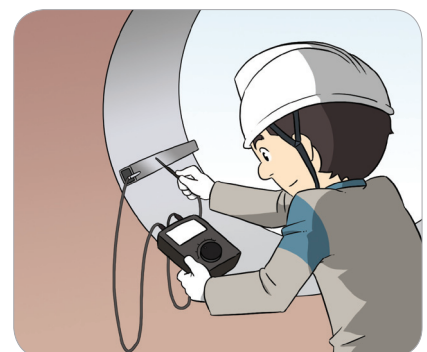
발생 원인

- 공사 전 원형개구부 양카볼트작업 시 누전발생
- 해머드릴 등으로 콘크리트 천공 후 양카볼트 시공 과정에서 매입된 전선과 접촉되어 누전
- 작업 전 충전여부 확인 미 실시

TIP

안전작업

- 1** 건물 벽체를 통과하는 시설물(전선 등)에 대한 사전 파악 철저
- 앵커볼트 시공 등 작업 전 벽체 내부의 전선 시설물 파악하는 등 사전 준비 철저
- 2** 작업 전 충전여부 확인 실시
- 전원을 차단한 후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에 대한 충전 여부 확인



충전여부 확인



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(전기 기계 · 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 (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)





커튼월 하지철물 설치 작업 중 감전

건축물 앵커작업 시에는 사전에 내부 시설물에 대해 확인하세요!

